

■ 최신 법령 ■

[자본시장] 파생결합증권 발행규제의 역외 적용 요건 구체화

이행규 변호사 | 이은영 변호사

1. 개정 배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일정한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여 국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외국 투자매매업자를 금융투자업자로 보아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규제의 필요성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즉, 자본시장법은 (i)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으로부터 해당 파생결합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경영건전성, 불공정 거래 방지 등의 감독을 받고, (ii) 경영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에 관하여 일정한 기준에 적합하며, (iii) 금융위원회가 해당 외국 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조사 또는 검사 자료를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고, (iv) 국내에서 파생결합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국내 투자매매업자가 인수하거나 투자중개업자가 중개하여 전문 투자자에게 매도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별도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2012년 11월 21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하여 위와 같은 요건 중 (ii) 외국 투자매매업자의 경영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과 관련한 요건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였습니다.

1. 자산총액, 영업규모 등이 국제적 영업활동에 적합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
2.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 100분의 8 이상이거나 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가. 당해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 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일 것
3. 최근 3년간 자본시장법,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법 처벌법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자본시장법,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투자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것
- 가. 업무의 전부정지 :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 나. 업무의 일부정지 :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
 - 다.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최근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한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 'CLN') 등 파생결합증권을 국내 투자매매업자가 매수한 후 이를 국내 투자자에게 전매하는 경우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2012년 9월 30일부터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국내 투자매매업자 등을 통해 판매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금융투자업 인가가 필요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하였고, 2012년 11월 2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적용 배제 요건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파생결합증권을 국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된 것으로 평가됩니다.